#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52

발의연월일: 2025. 2. 26.

발 의 자:박 정·이기헌·김용태

허 영·박상혁·정성호

김영환 · 정동영 · 김성원

허성무 · 이병진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 내용의 규정이 없음.

이에, 접경지역(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121조의17제1항제11호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84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7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8호·제9호 및 제11호"로 한다.

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에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기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지역 안의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하는 사업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경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 121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장을 신설하 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
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	세 등의 감면)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	
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	
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	
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	
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 ~ 10. (생 략) <u>&lt;신 설&gt;</u>	1. ~ 10. (현행과 같음) 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
	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 한다)에 사업장을 신설(기존
	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 한다)에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
	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 한다)에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하거나 공장을 신축・
	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에 사업장을 신설(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기존 공장을 이전하는
	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에 사업장을 신설(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기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에 사업장을 신설(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기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그 지역 안의 사업장 또는 공

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 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 법인 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 호 · 제4호 · 제6호 · 제7호 및 제10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 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 법인 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 호 · 제4호 · 제6호 · 제7호 및 제10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 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③ ~ ⑩ (생 략)

<u>ম</u> া8
호·제9호 및 제11호
<u>제8호·제9호 및 제11호</u> -
③ ~ ⑩ (현행과 같음)